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재택근무 지원 관련 안내

1. 관련: 사회적기업과-1021(2020.3.1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Q&A 송부
2. 위 호로 시달된 'Q8.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여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들의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사항을 송부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 재택근무 시행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보조금 지급 사업의 특성상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어 재정지원 사업 참여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원격근무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고, 근로자가 재택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일 업무처리 보고서 등)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허용됩니다.

<추가 설명자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상의 조치로 긴급한 강제 휴업명령이나 집합금지명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시작과 종료시각에 송부한 메일 등)와 업무처리 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긴급한 사유로 재택근무 활용한 경우에 익월 지원금 신청 시 근무장소 변경사항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시고,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근로자는 같은 호로 시달한 지원대책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동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고, 기초자치단체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회적기업에서 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광역자치단체(사회적기업 업무담당) // 참고: 지방관서(사회적기업 업무담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주무관 **황석영** 행정사무관 **정익수** 사회적기업과 전결 2020. 12. 22.
장 **지영철**

협조자

시행 사회적기업과-4868 (2020. 12. 22.)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5층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429 팩스번호 044-202-8051 / quartz12@korea.kr / 비공개(5,7)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